2025년 경북형(포항)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 공고

경북 포항 소재 중소·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, 「2025년 경북형(포항) 스마트공장(기초단계) 구축지원사업,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16일 (재)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경상북도 포항시 내 중소·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 의 스마트공장(기초)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
□ 지원규모

- (목표수량) 7개사 내외*
 - * 스마트공장(기초) 보급·확산 사업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
- **(지원규모)** 소요 비용의 50% 지원(최대 50백만원)

지원구분	지원금 한도	사업기간	접수형태
기초	최대 50백만원	(7i) (c)	온라인 접수
동일수준	(총 사업비의 50% 이내)	6개월	(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)

- ※ '동일수준'은 수준 향상 없이(기초→기초) 재신청하는 경우
- ※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

2. 주요 내용

□ 지원내용

- IoT, 5G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
-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 및 스마트 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 등

구분	지원내용
S <i>J</i> W	•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구축·연동 지원
Н / W	• IoT, 5G, AI, 클라우드 등 첨간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 *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

□ 지원조건

지원유형	지원조건	지원금(최대)	사업기간
기초단계	-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	0.5억원	6개월
기초단계 (동일수준)	-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* 기초 → 기초	0.5억원	6개월

- * 구축 완료 후 수준 확인,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(최종 감리에서 수준 측정)
- * 총사업비의 50% 이내 지방비지원, 나머지는 기업 부담
- * 사업 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(6개월+3개월, 총 9개월)

□ [참고]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

수준	투구분	수준요약	상세내용	지원유형
7א 0	미적용	수기작성	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, Excel 정도 활용	스마트공장 미적용
Lv.1~2	기초	생산정보 디지털화	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(전산데이터) 수준 - 구매·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~~ 공정물류관리수준(POP)	기초
Lv. 3	중간1	생산정보 실시간 수집/분석	① 생산설비, 공정,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-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,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/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(사람) 실시	고도화1
Lv. 4	중간2	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	① 수집/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	고도호[2
Lv. 5	고도화	맞춤형 유연생산, 지능형공장	① 사물인터넷(IoT), 사이버 물리 시스템(CPS)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	

□ 신청자격

그ㅂ 기이스중		신청자격		괴소리어그서	
구분	지원유형	기업규모	목표수준	컨소시엄구성	
T: 0]	기초단계	포항 내	- 기초단계 구축 예정기업		
도입 기초단	기초단계	중소·중견	-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	도입기업,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	
/1日	(동일수준)	제조기업	- 구단왕강 없이 세신경이는 경구		
공급	공급 -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				
기업	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				

- * 경북 포항 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 중 경북 포항 내 소재하는 기업
- *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 신청 가능
- *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판단 시 '14~'24년까지 지원받은 사업 이력으로 판단
 - ≫스마트팩토리지원사업, 대중소상생형,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(기초), 업종별 특화사업,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, 제조데이터분석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요건검토 시중복사업 검토 예정
- *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('14년~'24년까지 모든 지원기업) 하며,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
 -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(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) 확인 방법
 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(www.smart-factory.kr) → 사업안내 → 도입 기업 지원현황 → 사업자등록번호 조회(최근년도 수준 적용)
 -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
- 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예시, 기초→기초) 재신청하는 경우. 단, 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
- *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 신청 가능. 단, 종 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)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

□ 지원 제외 대상

- 과제 신청일 기준, 중기부 및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
- ㅇ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< 부적격 사항 >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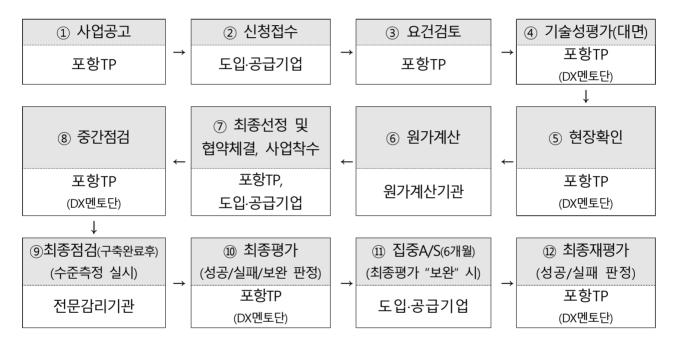
· 휴·폐업중인 기업 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
·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'참여제한' 중인 기업

□ 일정 및 절차

- (공고기간) 2025년 6월 16일(월) ~ 7월 16일(수)
- (접수기간) 2025년 6월 30일(월) ~ 7월 16일(수)
- (지원절차)



* ⑩최종평가결과 "보완"인 경우 '⑪집중A/S' 및 '⑫재평가' 진행

□ 신청방법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- * 신청 시 반드시 사업명을 '2025년 경북형(포항) 스마트공장(기초단계) 구축지원 사업 공고'로 선택
 - ** 구축예정지(공장)가 포항에 소재하는 경우 "포항TP"로 사업 신청
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 - 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(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)

ㅇ 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	비고	
필수		사업계획서	[서식-1]	
필수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[서식-2]			
필수		사업자 등록증 명원	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	
해당 시		공장등록증	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	
필수	도입기업의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유효기간 내 서류	
필수	2023년 재무제표		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계기관 발급용 등	
ēT.	2024년 재무제표			
	기업 확인서	소상공인 확인서	중소벤처24 https://www.smes.go.kr 또는	
필수		' 그 무수 기안! 와이셔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://sminfo.mss.go.kr	
		중견기업 확인서	정부24 https://www.gov.kr	
필수	2023년 고	용보험 시업장 자격취득자 명부	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발급 · 검색기준 (시작과 종료일 동일)	
eT.	2024년 고용보험 시업장 자격취득자 명부		- 2023년 : 2023.12.31.~2023.12.31. - 2024년 : 2024.12.31.~2024.12.31.	
필수	S/W개발비 산출내역서 (FP산정자료)		붙임4. FP산정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자료 참고	
해당 시	우대사항 증빙자료		- 우대사항(가점) 해당 시	
해당 시	7 -	추진사업 완료보고서	- 동일수준의 경우 반드시 제출	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 될 수 있음
- 선정절차 : ①접수 및 요거검토 \rightarrow ②기술성평가 \rightarrow ③현장확인 \rightarrow ④최종선정

구분	개요	평가기준
① 접수 및 요건검토	∘신청서 검토	· 신청자격, 가점 확인
②기술성평가	∘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(발표)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	∘ 기술성평가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
③현장확인	∘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적/부 판정	∘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
④최종선정	∘ 최종 선정·후보·탈락 기업 결정	-

^{*} 현장 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 사례 발견 시 탈락

□ 기술성 평가 ★상세 일정은 선정 절차 추진 상황에 따라 변통 가능

- (평가일시) 2025. 7월중
- (평가장소) 추후 안내 예정
- (평가대상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접수기업 중, 요건검토 "적정"기업 대상
- (평가방법) 발표 및 질의응답(총 40분, 발표 20분, 질의응답 20분) *동점자 발생 시 기술성 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
- o (참석대상)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담당자
- (기업선정) 기술성평가 점수와 가점(신청기준)을 합산하여 최종점 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를 고 려하여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 선정

○ (평가항목)

- 기술성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,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평가 점수 산출,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

	평가 항목	배점
	·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	10
도입·공급 기업 역량	∘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(35점)	∘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○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 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
스마트공장 구축	·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목표수준"에 부합되 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목표 설정 타당성(20점)	○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 표수준" 달성에 적합한가?	10
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	○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 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(20점)	∘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 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10
스마트공장 구축	•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– 구축내용 -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 과금액 등의 적절성)	10
목표달성 가능성 (25점)	∘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10
· · ·	·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5
가점(5점)	∘ 아래 가점 항목 참조 (항목별 3점, 5점까지 인정)	(5)
	합 계	100

우대가점	평가기준 및 제출서류
	·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
스마트공장 교육	CEO·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
	* '21년~'25년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제출 (공고일 이전까지 이수 완료 必)
포항시	· 포항시가 지정하는 유망강소기업 지정 기업일 경우
유망강소기업	*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제출
공급기업 소재지가	· 사업공고일 기준, 공급기업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 내 소재하는 경우
포항인 경우	* 본점 및 지점이 경북 포항 내 위치하는 경우 (사업자등록증 제출 必)

□ 현장 확인

○ 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 및 가점 여부 확인

확인 항목		확인여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·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	적/부
	·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	적/부
	·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	적/부
가점여부	·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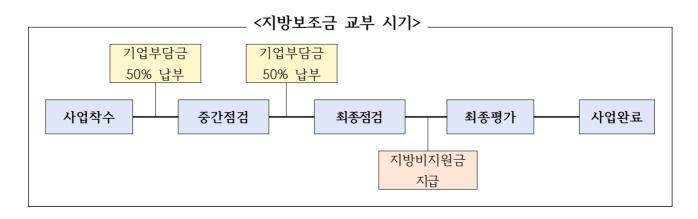
3. 기타사항

□ 사업관리 기준

- 경북형(포항) 스마트공장(기초단계)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와 공고문 내 안내 사항에 따라 사업추진 및 관리에 우선 적용함
-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어 및 관리기준 등, 사업계획서 및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「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」 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을 준용함

□ 자부담금 사용 및 지원금 교부

- 경북형(포항) 스마트공장(기초단계) 구축 지원사업은 RCMS(연구비통 합관리시스템)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 접 지급
- 사업착수 이후 점검 시 자부담금(기업부담금) 지급여부 확인
 - * 자부담금(기업부담금)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수행기업(도입, 공급) 간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나, 아래 기준 준수 필요
 - (중간점검 전) 자부담금(기업부담금) 최소 50% 이상 지급
 - (최종점검 전) 자부담금(기업부담금) 잔액 지급
- 최종점검 결과, "적정" 판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
- (최종점검 결과 "적정") : 최종점검 후 지방보조금 전액 교부
- (최종점검 결과 "보완") : 재점검 실시, 재점검 결과 "적정" 후 지방보조금 전액 교부



□ 기타사항

- 지정회계법인이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실시
 - 회계법인 정산 수수료를 사업비 중 '기타비용'에 편성 필요(500천원)
- (기술임치) 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, 영업비밀 등 지식
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업수행 결과물 임치 의무
 -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, 저작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기관 2년 이상 임치
 -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일괄 선집행 할 수 있음
-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* 및 사후관리(시스템 안정화, AS관리 등) 인력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20% 이내(최대 1천만 원) 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
 - * 공정 프로세스 분석,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
 - *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
-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
-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 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.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(6월・12월) 수기 등록 가능
- 선정시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
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·평가항목* 예외 인정 *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
 - 단, 공장설립(계획)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
-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 기업 풀(Pool)에 등록(필수사항)하여야 하며, 자동화·센서·로봇 등 비솔루션(H/W)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

4. 문의처

○ 포항TP 전략사업본부 기업지원팀 (054-223-2242, smk@ptp.or.kr)